

■ 판례 동향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이중 시스템 온수기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당장 내년 시행 美 청정경쟁법,
韓 10년간 2.7조원 부담

Clean
Competition
Act
2025



9 772799 725006
ISSN 2798-72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1월 4일(통권 제2105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당장 내년 시행 美 청정경쟁법, 韓 10년간 2.7조원 부담

06 Weekly News**20 전문가 칼럼**

정승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정책조사분석팀 수석연구원(경영학 박사)

관세행정실무해설

- 26** 관세행정안내
수출자와 생산자가 각각 인보이스를 작성한 경우
한·EU FTA의 적용
- 33** 질의응답사례
특송물품 연초 통관

판례동향

- 35** 관세판례해설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 45** 품목분류해설
이중 시스템 온수기의 품목분류
- 53** 품목분류 M.A.P
치간 청결용 실 분류사례
- 57** 세번 바로잡기
활성탄
- 59** 상식 밖의 상품학
매운맛의 원조, '청양고추' 재배 면적 점차 줄어

최신개정법령

- 62** 대통령령
「관세법 제기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66** 고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 68**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당장 내년 시행 美 청정경쟁법, 韓 10년간 2.7조원 부담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탄소세에 부과 … 2027년에는 완제품으로 확대

미국 청정경쟁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이같이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청정경쟁법안(CCA, Clean Competition Act)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탄소세(온실가스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 최초 시행한 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미국 민주당이 최초 발의, 2023년 11월 공화당이 동일한 내용의 ‘해외오염 관세(Foreign Pollution Fee)’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민주당이 청정경쟁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양당이 모두 지지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삼일PwC가 올해 1월 발표한 ESG뉴스레터에 따르면 청정경쟁법안 최초 발의 당시 미국 제조업은 탄소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어 탄소집약도를 전 세계 평균 50% 미만으로 낮췄지만, 중국은 3배, 인도는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탄소집약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美 상원은 국가별 탄소집약도 차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만큼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단위당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과 미국의 탄소집약도는 각각 0.14, 0.11이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증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즉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비율 1일 때 한국 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 수입업자는 5,500달러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수입업자는 한국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게 되고 이는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2조 7,000억 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용 범위에 따라 원자재에는 1조 8,000억 원, 완제품에는 9,000억 원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석탄제품(1조 1,000억 원), 화학제조업(6,000억 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액은 2016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 2023년 기준 총수출액의 18.3%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반도체, 철강 등이다. 청정경쟁법이 완제품으로 확대 적용되기 이전 대상 품목에는 석유제품(HS코드 제2710호), 환식탄화수소(HS코드 제2902호) 등이 해당된다. 이는 對美 상위 10대 수출품목에도 포함되는 품목들이

다. 한경협은 對美 소비재 수출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30%로, 중국(6.7%), ASEAN(5.2%), EU(13.0%)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27년 탄소세가 완제품 대상으로 부과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탄소세 비용은 2025년 1,449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2034년에는 3,18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주요국보다 저조해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국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보다 저조하다. 삼일PwC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무상할당비율을 고려하고 원산지에 따른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청정 경쟁법이 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삼일PwC 소주현 파트너는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도입 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계획돼 있어 그야말로 기업에는 ‘발등의 불’이다. 다만 청정경쟁법은 일부 최빈국의 수출품은 면제, 수입국의 정책 및 활동 수준에 따른 면제 등 제도 시행에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은 산업, 건물, 수송 등 여타 부문의 주요 탈탄소화 전략인 전기화의 선결 조건으로 알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연·원료에너지를 기존 에너지원에서 전기로 변환시키는 전기화(electrification)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약 24.3%에 달한다.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간 탄소집약도를 1% 개선하면 미국 탄소세 비용은 4.9%(약 88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에너지원의 균형적 보급, 국가 계획 내 전기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충분한 반영 등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청정경쟁법은 탄소클럽(carbon clubs) 조항을 통해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일부)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상대국에서 탄소가격제로 청정경쟁법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을 부과한다면, 탄소세를 면제해 이중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와 탄소가격 현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입국의 탄소집약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탄소집약도를 적용해 탄소세를 산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출범한 탄소감축포럼(IFCMA)의 탄소집약도 연구 결과가 탄소세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전복·마른김·미역 '서류 1종'만 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K-FISH 인증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

전복, 굴, 미역, 바지락, 멸치 등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보다 수월해진다.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의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의거 서류 19종, 품목 1,225개가 지정돼 있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개발·운영하는 상표로, 원산지 확인은 물론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식품에만 부여된다.

관세청과 해수부의 이번 협업에 따라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은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돼 FTA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적용 대상인 K-FISH 품목은 총 11개 품목, 16개 품종이다.

● FTA 원산지 간편인정에 추가된 K-FISH 품목 ●

K-FISH 11개 품목, 16개 종류	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김(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굴(냉동한 것), 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봉장어 필레(신선·냉장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봉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인정서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의 운영·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수산물회 발급)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한국産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일반 수출품목은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입증자료,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K-FISH 인증' 수출업체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도 간편인정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돼 기존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됐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수출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국경 첨단 장비 도입 ··· 마약·불법물품 적발 향상 기대

과기정통부·관세청,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 성과 발표

마약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소형화물 검색용 엑스레이 장비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 이러한 첨단기술을 도입해 마약 등 불법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부처는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성과물을 시연하고, 양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 및 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와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및 부정·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세계 최고 수준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2021~2024년)’을 공동 추진해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X-ray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올해로 실증을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성과로 우선 마약 등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X-ray 장비를 국산 개발했다. 기존의 투과형 외국 장비와 달리, 산란 방식을 추가해 물품의 판독 능력을 높였다. 원자력연구원은 해당 기술을 개발해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시제품을 설치하고, 11월부터 실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판독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형 수화물 검색기도 100% 국산화 개발해 외국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검색이 어려웠던 우편 등 소형 화물에 은닉된 마약류를 적발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국내에서 마약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확산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AI 기반의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도 개발됐다. 공항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우범여행자의 동선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이 아닌,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어 군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우범여행자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직원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X-ray 판독 트레이닝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능화되는 마약 등의 은닉영상을 토대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3D 영상을 생성, 훈련함으로써 마약 등 불법물품의 적발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실증, 공공 조달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관세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25년부터 공동 추진하는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마약의 반입차단 등 공공서비스를 첨단화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연구결과”라고 평가했다. | 김성은 기자 |

식품용 기구·포장 수입검사 '48시간 → 5분'으로 단축

‘전자심사2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확대 적용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할 때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할 수 있게 돼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까지 확대하며 2025년 1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 신고수리 대상 요건은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다. 기존에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만 해당됐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수입검사(서류) 시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2023년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은 48만 톤이 수입됐다. 그중 이번에 시범 적용되는 일부 기구 및 용기·포장 수입량은 약 10.8%를 차지한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순이며 상위 5개 재질은 합성수지(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불소수지, 폴리스티렌), 금속제, 무착색 유리제, 도자기제, 고무제 순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자동 신고수리에 적용되는 대상은 식품 접촉면에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아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무착색 투명 유리제, 부식 위험이 낮은 스테인리스 금속제와 돌솔·바나나 잎 등 천연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된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에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사하고, 검사관이 결과를 확인해 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주요 적용 품목 ●

재질	품목	제품 예시
유리제	• 무착색 유리제 ※ (제외) 가열조리용,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	컵, 접시, 내열용 빨대, 계량컵 등
금속제	• 금속제 중 스테인리스 ※ (제외) 합금, 도금이 된 스테인리스는 제외	프라이팬, 주방용 칼, 가위 등
기타	• 천연의 원재료	돌솔, 돌절구, 코코넛 껍질 그릇, 바나나잎 등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심사24 시스템을 2023년 식품첨가물, 2023년 12월 농·축·수산물, 올해 5월 모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 1 ~ 9월 기준 약 5만 건이 자동으로 신고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전자심사24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수지제, 도자기제 등 재질의 경우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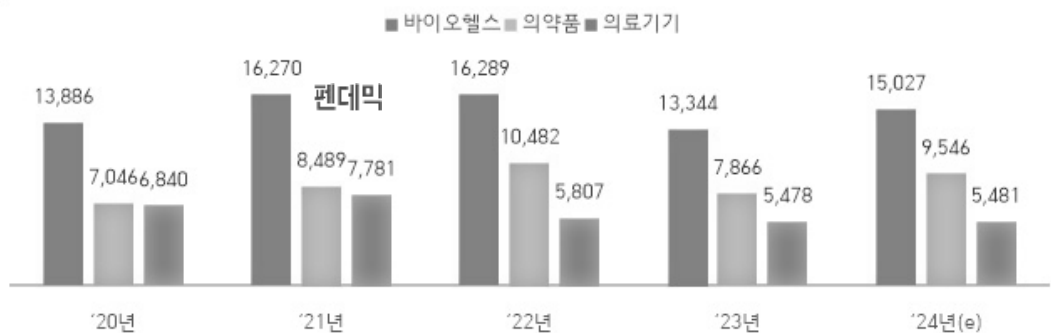
정부, 제2의 수출 주역으로 'K-바이오' 육성 추진

바이오시밀러는 제2의 메모리 반도체, CMO는 제2의 파운드리급 성장 목표

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확고한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를 반도체에 이은 제2의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출 5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목표도 설정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방문해 바이오가 우리 수출의 제2의 반도체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 2022년 바이오헬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다 엔데믹 이후 방역물품 및 백신 수요 감소로 2023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올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위탁제조(CMO)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됐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CMO공장 가동률 상승, 미국·EU의 바이오시밀러 사용 장려 등의 기회 요인으로 수출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20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을 추가하기 위해 바이오 육성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바이오 경제 무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수출기업에 올해 4분기에 1조 원 규모의 수출보험 집중 지원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시장에 설치된 K-바이오데스크를 7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해 인허가, 통관 등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과 현지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위한 세제·금융·인프라 지원도 강화해 작년 6월에 지정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로 도약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 구축도 지원한다. 올해 4월 발표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2023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는 한편, 소위 '수퍼 乙'로 불리는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기업을 양성해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사과·배’ 대만 수출용과 타 국가·내수용 동시 선과 작업 가능

앞으로 국내산 사과·배를 대만으로 수출할 때 타 국가 수출용 및 내수용 제품과 연중 상시 동시 선과 작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만정부와 수출검역요건을 이와 같이 완화하는 데 합의하고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10월 28일 밝혔다.

대만 수출용 국산 사과·배는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한 검역요건에 따라 검역본부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되고 재배·선과·포장 등 전 과정에 검역 절차를 거쳐야만 수출될 수 있다. 또한 대만 측의 규제에 따라 현지에서 금지 해충으로 지정돼 있는 ‘복숭아심식나방’ 활동기인 5 ~ 10월에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배는 다른 국가나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사과·배와 동시에 선과 및 포장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제로 국내 선과장에서는 대만이 아닌 국가나 내수용 판매를 하려면, 대만 수출용 제품과 별도로 선과 및 포장 작업을 진행해야 했고 추가 노동력 투입에 따라 비용 부담을 겪었다. 특히 대만은 추석 명절 기간이 우리나라와 유사해 9 ~ 10월 중 추석 대비 물량 작업이 내수용 작업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에 동시 작업이 허용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만 측에 대만 수출 과수원으로 등록된 농장에서 생산한 사과·배를 선과할 때는 모든 기간에 타 국가 수출용 및 내수용과 동시에 선과·포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올해 10월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검역요건 완화로 사과·배 대만 수출 농가와 선과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조사 결과 ‘알리 미흡’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보호에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가 다소 부족했으며 물품 판매 화면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월 31일 올해 6월부터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2개 항목),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및 방법(5개 항목), ▲소비자 보호제도(3개 항목) 등 3대 분야, 10개 세부 항목, 4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옥션과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대부분 한국 업체들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이었다. 테무는 중국 내 등록된 생산자만 판매자로 입점 받고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이 불가해 구매대행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이 없기 때문으로 조사 항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은 기자 |

해산물류 공급망, 선박 '사이버안전'으로 지킨다

선사·선박 대응역량 강화 지원, 법적기반·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등 추진

민간 선사·선박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해양수산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민간 선사·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사 사이버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 및 운항시스템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박 내 장비 간 또는 선박·육상 간 네트워크 연결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으로 운항통제권을 10시간 상실한 사례, 선사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약 3,0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해수부가 마련한 대책은 ▲선사·선박의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 선사·선박에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사고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 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선사·선원 등의 보안 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장비 등이 민간(국제선급협회)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 지원을 통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기관 간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정책·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등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장비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각종 보안기술을 육·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하고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통한 물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선사 등 민간에서도 선박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해수부, '우리 김' 고급화로 글로벌시장 수출 확대

김의 브랜드화, 수출 지원으로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목표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우리 김의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주기 개선방안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김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으로 작년 최초로 수출 1조 원(7억 9,0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음식의 세계적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요 급증발 공급량 부족, 김 가공 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 구성된 김 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가 제시한 김 산업의 문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강화 방안에는 '글로벌 김 산업 주도권 공고화'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전략을 담았다.

먼저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안정적 원물 공급을 위해 김 양식장 확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소규모 양식장을 통합하는 어업법인화 지원사업을 펼쳐 내년 마른김 생산을 올해 대비 7% 증가한 1억 6,000만 속을 생산할 계획이다.

규모화·스마트화를 통한 가공과 유통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으로 김 가공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까지 목포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해 김 가공·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 수출 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등급제 도입, 다양한 신제품도 개발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김은 Nori, Seaweed, Laver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돼 브랜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우리식 김 영문 명칭인 'GIM'을 널리 알리고, 우리 김 제품 규격안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를 추진한다. 국제표준으로 인정이 되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는 좋은 김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는 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품질의 김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해외무역지원센터를 개설해 유럽 김 시장 개척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김 간식, 김을 활용한 소스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 밥 반찬이 아닌 다양한 소비시장을 창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은 반찬, 김밥 등으로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식품이자, 이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먹거리로 거듭나고 있다”며,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기억력·집중력’ 좋아진다더니… 해외 직구 건강식품에 위해성분 검출

식약처·한국소비자원, 수능 앞둔 수험생 구매 주의 당부

뇌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해외 직구 제품에 위해 성분이 다수 발견됐다.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표방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뇌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19개를 공동 조사했다. 검사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우선 전문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포세틴, 갈란타민, 시티콜린 등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혈류 개선제 일종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 복용하면 유산이나 태아 발달장애 등 부작용 유발 우려가 있다.

갈란타민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일종이지만, 식욕 저하, 오심, 구토,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약물 투여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인지기능이 심하게 나빠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시티콜린은 뇌졸중 치료제의 일종으로 복통, 요통, 두통, 시야흐림 등의 부작용이 있다.

● 전문의약품 성분 표시 사례 ●

성분명	제품 사진	제품 표시
갈란타민		GALANTAMINE, Galantamin Hydrobromide(lycoris radiata) extract(root)
빈포세틴		Vinpocetine
누펩트		Noopept

출처 : 한국소비자원

그밖에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누펩트, 석송, 바코파 등도 다수 검출됐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 김성은 기자 |

올해 3분기 전국 항만물동량 3억 8,974만 톤 처리

美·中 주요국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물동량 0.2% ↑, 비컨테이너 0.1% ↑

전국 무역항 3분기 물동량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항만별 물동량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광양항과 인천항은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총 3억 8,974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3억 2,646만 톤 대비 21% 증가한 3억 3,344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5,703만 톤 대비 1.3% 감소한 5,6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울산항, 평택·당진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 5.1%, 1.9% 증가했고 광양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씩 감소했다.

●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2024년 3분기) ●

(단위 : 만 톤,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4년			
				7월	8월	9월	3분기
총물동량	39,918	39,154	38,350	13,125	13,448	12,401	38,974
전년 동기 대비	9.8	△1.9	△2.1	1.4	5.4	△1.9	1.6
수 출 입	34,264	32,904	32,646	11,223	11,470	10,651	33,344 (2.1)
연 안	5,654	6,250	5,703	1,902	1,979	1,750	5,630 (△1.3)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756만 TEU 대비 3.5% 증가한 782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432만 TEU 대비 0.2% 증가한 433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중동정세, 컨테이너 운임 불안정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4.3% ↑, 중국 3.0% ↑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19만 TEU)에 비해 8.0% 증가한 345만 TEU를 기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미국(17.8% ↑)과 중국(6.0% ↑)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576만 TEU에 비해 4.9% 증가한 604만 TEU를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부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266만 TEU)에 비해 1.2% 증가한 269만 TEU를,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10만 TEU) 대비 8.1% 증가한 335만 TEU였다.

반면 인천항은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컨테이너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88만 TEU 대비

1.9% 감소한 86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87만 TEU 대비 1.8% 감소한 85만 TEU,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1만 2,000 TEU 대비 9.3% 감소한 1.1만 TEU를 기록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49만 TEU 대비 1.8% 증가한 50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42만 TEU(전년 동기 42만 TEU)를,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7만 5,000 TEU 대비 13.4% 증가한 8만 5,000 TEU를 기록했다. 이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중남미) 서비스 유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항만의 2024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2억 5,256만 톤으로, 전년 동기 2억 5,239만 톤 대비 0.1% 증가했다. 울산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인천항은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광양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석유정제품과 철광석 수입, 석유가스 등의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원유, 유연탄 등의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6,210만 톤 대비 1.0% 감소한 6,150만 톤을 처리했다.

울산항은 원유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4,634만 톤 대비 5.0% 증가한 4,867만 톤을 처리했다.

평택·당진항은 광석 수입은 감소했으나 석유가스, 자동차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2,408만 톤 대비 1.6% 증가한 2,446만 톤을 처리했다.

대산항은 원유 수입과 석유정제품 수출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1,900만 톤 대비 21.3% 증가한 2,304만 톤을 처리했다.

인천항은 석유가스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2,203만 톤 대비 0.6% 증가한 2,216만 톤을 처리했다.

품목별로는 유류, 자동차는 각각 5.2%, 5.0% 증가했고 광석, 유연탄은 각각 4.2%, 6.1% 감소했다.

유류의 경우 울산항, 광양항의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대산항의 원유 수입, 인천항, 보령항, 광양항 등의 석유가스 수입, 울산항과 대산항의 석유정제품 수출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 1억 970만 톤 대비 5.2% 증가한 1억 1,546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광양항과 포항항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평택·당진항, 동해·묵호항, 인천항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3,257만 톤 대비 4.2% 감소한 3,119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의 경우 하동항, 평택·당진항의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동해·묵호항, 보령항, 태안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3,261만 톤 대비 6.1% 감소한 3,061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2,232만 톤 대비 5.0% 증가한 2,343만 톤을 나타냈다.

| 하구현 기자 |

“3년 내 스위스 잡는다” 수출 성장세 독보적인 K-임플란트

올해 1 ~ 9월 6억 5,000만 달러로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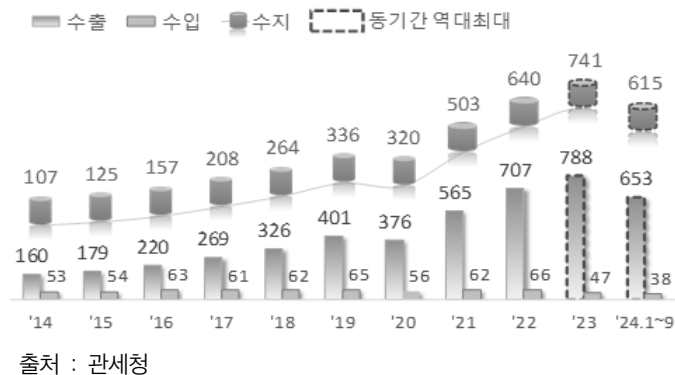
현재 수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K-임플란트가 올해 1 ~ 9월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10월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 ~ 9월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액은 6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어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관세청은 K-임플란트가 가파르게 성장한 비결로 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과 임플란트 수요 증가와 우수한 품질에 기반한 세계시장 공략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출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미국, 튀르키예 순으로, 전체 수출대상국 93개국 중 상위 5개국을 포함한 38개국 수출액이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상위국의 수출 비중은 각각 중국(38.9%), EU(12.0%), 러시아(11.2%), 미국(8.0%), 튀르키예(4.7%) 순이다.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한 성장세로, 작년에는 역대 최대인 7억 8,800만 달러를 달성했다.

● 임플란트 수출입 현황 ●

(단위 : 100만 달러)



관세청은 “작년 최대 수출실적을 이끈 상승 동력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 연말까지 수출 신기록 재갱신이 기대된다”며, “국내 소비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은 감소세를 보여 무역수지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의 국내산 비율은 96%에 달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세는 유독 눈에 띈다. 지난 10년간(2014 ~ 2023년)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이 연평균 19.4% 증가해, 세계시장 수출 2위를 달성했다. 세계 1위인 스위스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9.0% 성장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 성장세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3년 내 세계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김성은 기자 |

美 ITC, 한국産 등 14개국 알루미늄압출재 반덤핑 부정 판정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30일 한국産 등 14개국 알루미늄압출재 반덤핑 조사 결과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0월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등 14개국 알루미늄압출재 반덤핑 제소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나온 셈이다.

미국의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美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따라서 올해 9월 27일 美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 ~ 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없어져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美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월 27일 美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규칙 발표 … 국내 영향 제한 적일 전망

미국 재무부는 10월 28일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 예정인 이번 행정규칙은 작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 유일해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수은, 글로벌 생산거점 부상국 인도에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원 … 현지 진출 우리 기업 혜택 기대

韓·美·日 개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인도 디지털 인프라 분야 사업발굴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인도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고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0월 27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함께 인도 디지털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자 ‘인도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동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니셔티브를 통해 3개 기관은 인도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5G·오픈랜(Open RAN)·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사업발굴 및 금융과 비금융 지원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수은은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높은 내수시장 잠재력과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인도에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수은은 개발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10월 초 ‘개도국 민간투자자금대출’을 신규 도입,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해외 영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혜택이 기대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주요 무역항 드론 위협 대비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최근 전쟁에서 주요한 위협수단으로 등장한 드론 공격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까지 주요 무역항을 중심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29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등에 대비해 탐지·식별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해 추진되며,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은 올해 사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무허가 드론의 접근과 침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하구현 기자 |

농식품부, GMP기반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을 위탁생산할 수 있는 ‘GMP기반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이 10월 29일 문을 열었다.

반려동물 사료첨가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수출 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등 규격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초기투자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GMP 인증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미생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GMP기반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은 미생물 대량배양, 동결건조, 포장 시설·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개발한 수출용 미생물 제품의 위탁생산(GMP 인증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 짝퉁 포토카드’ 123만 장 밀수·유통한 40대 적발

부산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A씨(40대, 남성)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만 여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 ~ 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대에 판매해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세관, 성실 상환 체납업체 위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펼쳐

서울세관이 납세 의지가 뚜렷한 성실 상환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완납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 나섰다. 10월 29일 세관에 따르면, 성실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압류 등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 감소로 체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업체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금액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FTA 활용 컨설팅도 제공했다.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결과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체납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앞으로도 세관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업체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정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국 거냥한 美 생물보안법, 韓 바이오 기업 품질로 틈새 공략해야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 보안법 :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



정 승 용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정책조사분석팀 수석연구원(경영학 박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의료장비 등 핵심 물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안전한 공급망 확보’는 국가적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종합적인 공급망 검토를 하고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강력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美 하원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바이오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초 발의한 ‘생물보안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과정을 진행 중이다.

미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패권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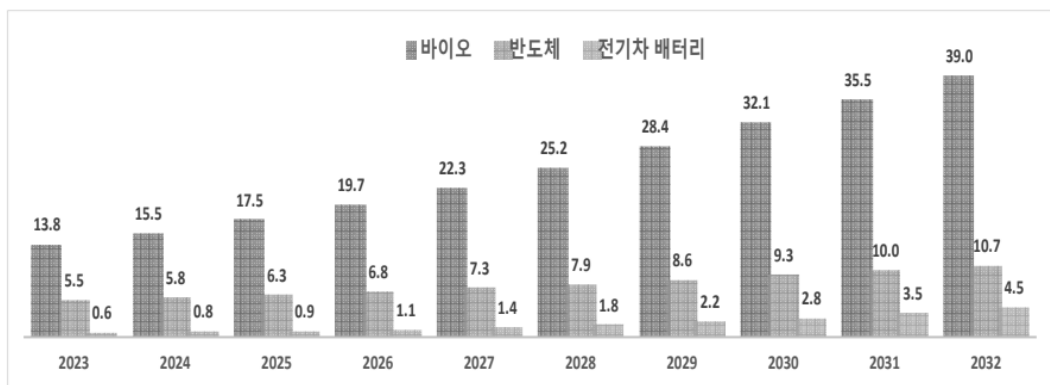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미국은 공급망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중심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 정책은 미국 내 반도체와 친환경 관련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령 미국반도체 산업협회(SIA)가 2024년 5월 발표한 ‘미국 반도체공급망 강화(Strengthening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 25개 주에서 80개 이상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4,50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촉진시켰고 미국 반도체 생태계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CHIPS)와 전기차·배터리(IRA) 투자 유치와 생산역량 향상 등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바이오 공급망 재편 정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10년 후 현재의 2.8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미래산업으로 바이오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23년 1조 3,800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3조 9,000억 달러로 2.8배 성장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3.6배, 전기차 배터리의 8.7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은 바이오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수입 의약품의 31.5%가 중국[미국 수입 의약품 생산국(2023) : 1위 중국(31.5%), 2위 인도(26.1%), 3위 독일(5.6%), 4위 이탈리아 (3.8%)]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 내 생산 능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시장 규모 비교 ●

(단위 : 1,000억 달러)



출처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자료 : Precedence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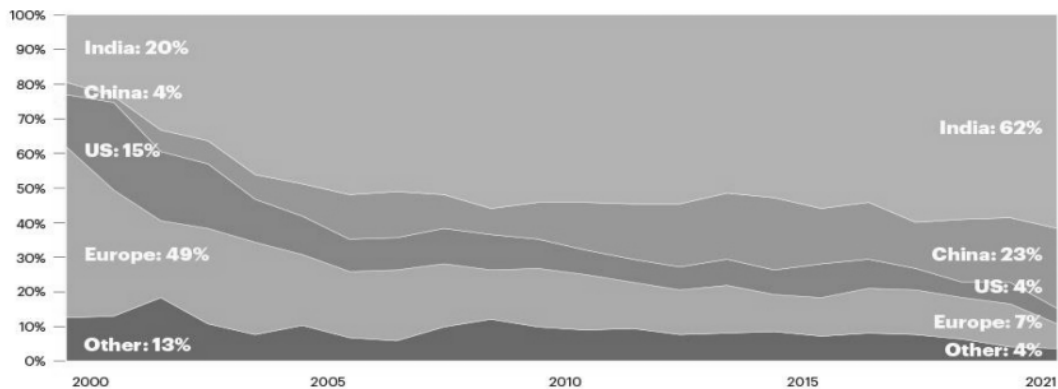
미국의 바이오 공급망 재편 정책 동향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격히 증가한 의약품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 의약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망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미국 내 의약품 생산 역량이 열악하고 해외 생산시설이 중국, 인도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원료의약품의 96%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이 85%를 차지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오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 공급망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9월 발효된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발명·개발된 바이오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미국의 바이오 발명품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를 위한 담대한 목표'를 2023년 3월 발표했다. 추진 목표는 세 가지로 ① 바이오 제조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조경로 개발, ② 공급망 중단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바이오 제조 플랫폼 R&D 추진, ③ 미국 바이오기업의 제조역량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표준 및 데이터 구축을 제시했다.

● 미국 원료의약품의 국가별 생산 비중(2000~2021년) ●



출처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자료 : USP, Pharmacopeia Medicine Supply Map 활용)

한편 중국은 2015년 'Made in China 2025' 계획에서 생명공학을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美 의회는 중국이 바이오 패권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세금과 납세자가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을 발의했다. 2024년 1월 발의 후 상·하원 위원회 심사(3~5월)와 하원 전체 회의(9.9)를 통과했고 상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될 예정이다. 최종 법률 제정까지 미국 대선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방향과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견제용 생물보안법의 주요 내용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자국 안보에 우려되는 바이오, 생명공학기업과 거래 및 계약,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생물보안법 입법 취지문에는 중국정부가 안보 관련 법률과 기업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입법 필요성이 강조됐다. 美 의회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급성장한 점, 바이오기업들의 친정부 활동과 데이터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생물보안법의 목적은 중국 당국과 연계된 기업으로 미국의 세금이 유출되고 미국 납세자가 관련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32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행 지침과 '우려 생명공학 기업' 목록을 마련하고 계약 금지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우려 생명공학 기업'은 중국 바이오기업인 BGI와 우시(WuXi) 그룹 관련 기업,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포함되며 유형별로 계약 금지 시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우려 생명공학 기업' 분야는 크게 ① 의약품 ② 유전체 관련 기업으로 구분되며,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내 관련 시장에 큰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보안법 제정, 어떤 도미노 일으킬까

1) 미국 바이오 시장 변화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안법은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① **미국 시장에서 중국 바이오기업의 점유율 저하** |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세계10대 컨설팅기업인 LEK컨설팅그룹이 미국 바이오 기업 7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24. 5. 24 ~ 6. 7)] 결과, 생물보안법 발의 전후 미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약 30~50% 감소했고, 설문 참여 기업의 약 26%는 중국 파트너와 협력 관계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공급망 다변화 및 자국 내 생산시설 확대** | 미국은 2022년 매출 기준 글로벌 10대 제약회사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제약산업 강국이지만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많은 제약회사들이 생산시설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도, 중국 등 저비용 국가들로 이전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신뢰성 있는 수요 예측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의약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및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과열 및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한다. 우리 바이오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다.

① **긍정적 영향** | 첫째,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CDMO 기업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CDMO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보유 분야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대체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팜테코, 에스티팜 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둘째, 글로벌 바이오 생산기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수한 생산 인프라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생산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5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되며, 롯데바이오로직스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CDMO 공장을 건설 중이다. 또한, 글로벌 협력 기회가 커질 수 있다. 미국 바이오기업은 중국 대신 다른 나라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분야 등에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② 도전 과제 | 첫째, 우선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할 우려가 있다. 미국 자국 내 바이오 생산 능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CDMO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설비 확보 등 자국화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CDMO 기업인 론자(Lonza)는 최근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공장 인수 및 제조 역량 확대를 추진 중이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 점유율 1위 [17%(2020년기준)] 국가로 중국 견제에 따른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 대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 기업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유전체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룰 때는 철저한 관리 및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 생물보안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생물보안법 제정으로 발생하는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점하고 미국의 자국 중심 바이오 공급망 구축과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결국 국내 CDMO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① 미국 시장 기회 선점 | 중국 CDMO 대체 공급처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형 CDMO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중소형 CDMO 기업들 역시 중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자국 생산 우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내 바이오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 후지필름의 경우 올해 4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세포배양 CDMO 확장을 위한 12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인도 큐라테크는 미국 머크(MSD)와 협력해 CDMO 시설을 구축 중이다.

②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산 | 우선 국내 생산 역량을 높여야 한다. 바이오 제조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핵심 원료 및 바이오의약품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 수준으로, 전체 원료의약품 수입의 35%를 중국에 의존(2021년 기준)하고 있다. 중국 관련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다변화 흐름에 맞춰,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바이오 원료와 완제품 등을 조달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바이오 혁신 역량 강화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임상시험 수행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임상시험 확대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④ 규제 대응 역량 향상 | 생물보안법 발효 후 바이오 관련 보안 및 품질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내부적으로 보안 및 규제 준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감사를 통해 규제 리스크 최소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입법 추진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선제적 전략 수립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물보안법은 국내 기업에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대체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국내 기업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를 통한 생산 역량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해외 파트너링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각각 인보이스를 작성한 경우 한·EU FTA의 적용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 기존의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송장 양식과 일부 상이한 경우 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문의 - 첫 장에 이탈리아의 인증수출자 A가 수입자 B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첨부(신고문안, 인증번호, 원산지 기재) - 구성품목이 다양해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생산자 C가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 첨부(품명, 원산지, 단가, 수량 등 기재)
답변	생산자가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선적서류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통해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2. FTA 원산지증명서

(1) 개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FTA가 발효돼 있다.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원산지 제품에 대한 수출 시 상대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제도가 적용되는 협정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 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를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뉜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신고 문구가 작성된 상업서류가 실질적인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의 역할을 하는 한·EU FTA에서 송장 양식이 일반적인 제시 형태와 다른 경우 FTA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과 고려사항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자율발급 체계를 따르며, ①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②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또한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다”라는 규정은 언뜻 보면 크게 고려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출자나 상업서류의 범위 등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출자에 대한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협정문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은 ‘수출자(exporter)’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이해 실제적인 원산지증명 능력이 수출자보다는 생산자에게 있는 경우 생산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했고, 특히 여러 국가가 함께 가입돼 있는 EU의 경우 국가 간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실제 수출자가 무조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청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의 범위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질의했고 EU 집행위원회는 한·EU FTA 협정문 상에서 ‘수출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한·EU FTA 의정서 제16(3)조 및 17(1)조를 살펴본 결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의 통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상업서류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업서류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범위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상업송장 등 인정되는 상업서류의 종류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래당사자(생산자, 수출자, 제3국에 소재한 중계무역상 등)에 의해 작성된 상업서류까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협정에서 원산지신고 문구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an invoice, a delivery not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무역실무상 상업서류는 ‘선적서류’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범위는 상업송장, 운송서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보험서류(보험증권 등), 포장명세서 등을 말한다. 그렇지만 한·EU FTA에서 상업서류의 범위는 이보다 더 좁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서 상업서류의 범위를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이라고 안내한 바 있지만, 현재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는 한·EU FTA에
서의 상업서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인정되는 상업서류로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양 당사자는 한·EU FTA 제16조 제4항의 ‘다른 상업서류’와 관련해
선하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에 동의한 내용에 따른 것인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돼야 하는데 선하증권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과거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선하증권(B/L)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송품장, 인도증서와는
달리 원산지 상품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어떤 거래당사자(생산자, 수출자, 제3국에 소재한 중계무역상 등)에 의해 작성된
상업서류까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인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한·EU
FTA는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작성 가능한 범위는 일반적인 작성 방법(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
작성) 외에 ① 역내 생산자가 작성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나 ② 제3국의
중계무역상이 존재하는 경우 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당사자가 작성한 상업서류인지가 아니라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3국 송장을 작성한 중계
무역상은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생산자가 작성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자와 수출자가
독일에 소재하며 제조자는 인증수출자이고 수출자는 비인증수출자인 경우로 수출자가 포장명
세서(Packing List)에 독일제조자의 인증수출번호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해 발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비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를 작성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명시된 바는 없지만, 이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한 질문 & 답변 사례로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인증수출자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례로 독일에 소재하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독일의 생산자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생산자라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제조자와 수출자 모두 EU 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제조자만 인증수출자인 경우 제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역내 생산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포장명세서가 우리나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발행됐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하나, EU 역내 생산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포장명세서가 EU 역내 수출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한 바 있다. 즉, 해당 사례는 생산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는 상대 당사국의 수입자에게 발행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제3국 송장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구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EU FTA에서는 제3국 송장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구를 인정하는데 이는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신고가 작성된 것을 유효한 원산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인 경우에도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6,000유로 초과 건)가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국내 사례로는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제3국(미국)에서 발행한 Invoice에 스페인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한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미국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스페인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 장소와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는 일반적인 송장 양식과 상이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다. 제시된 서류는 인보이스가 ① 수출자 작성 인보이스(원산지신고 문구 기재)와 ② 생산자 작성 상세 인보이스로 나뉘는데 서류상의 동일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서류들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동일성 입증에 관한 문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시되는 원산지증명서나 상업송장 등의 서류 및 물품은 동일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원산지증명서는 결국 상업송장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업송장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가격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정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제시된 물품이 동일한지를 확인(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 외에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해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면 첫 번째로 관세청에서는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의 FTA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초 보세판매장 반입 물품과 협정관세 적용 신청물품 간 동일성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공지한 바 있는데,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절차에서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최초 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①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관련 서류(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 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② 보세판매장 반입 사실 증빙서류(보세판매장 반입검사신청필증 사본, 보세판매장 최초 반입 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보세판매장 최초 반입 시 국제운송서류 사본), ③ 물품의 동일성 등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두 번째로 국내 보세창고 인도조건(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세창고거래 특성상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가 상이하더라도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B/L 양도 등을 통해 수입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는데, 다른 사례에서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출국을 한국(KR)으로 기재하더라도 협정 적용 가능에 대해서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수입 시 적출국을 한국(KR)으로 기재하더라도 협정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됐음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협정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물품임이 확인 가능하고, 협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 등이 상이한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송품장에는 Women Jacket, Women Dress, Women Pant로 기재돼 있고 각각 수량, Style no 등이 나뉘져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에는 Womens's Apparel이라고 광범위한 품명이 표기돼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과 송품장 품명·수량이 다른 경우 수입물품에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문제됐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 품명이 HS Code상 품명과 다른 경우에도 송품장의 물품과 동일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되는 경우 인정 가능한데, 제시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수량 등의 내용과 송품장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 물품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명'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물품과 수입신고 내역 및 수입신고 시 첨부서류와의 동일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상 품명은 동일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질문 & 답변에 대한 해석

질문 & 답변 사례는 일반적인 송장 양식과 상이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다. 제시된 서류는 인보이스가 ① 수출자 작성 인보이스(원산지신고 문구 기재)와 ② 생산자 작성 상세 인보이스로 나뉘는데 서류상 동일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일단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 문안이 작성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검증을 대응할 수 있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 문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수출자와 생산자의 인보이스가 둘 다 제시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답변으로 생산자가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선적서류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통해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즉, 수출자와 생산자의 인보이스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손쉽게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고 두 장의 인보이스가 제시될 필요도 없었겠지만, 수출자는 구성 품목이 다양해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송장에 각각의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를 첨부한 경우 각 서류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에 핵심인 것이다.

해당 질문 & 답변 사례의 상세 이유를 살펴보면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생산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의 물품과 동일성 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이 경우 구매주문서, 선적서류상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통해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동일성이 입증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실무상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서로 다른 서류가 제시되는 상황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서류 간 동일성이 입증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관련 서류를 상세히 검토해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 자료를 확인해 FTA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특송물품 연조 통관

**내용량 100g의 파이프 담배를 해외 직접 구매(직구)하려고 합니다.
통관절차와 방법,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고 분류된 품목번호로 수입요건 등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main.do) >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042-714-7535)

■ 품목번호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 방법

-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검색'에 HS Code 입력 후 조회
-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 5258, 5252(3과)
-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 담당)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담배의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달러 이하, 면세통관범위여도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유형 110g
- 기타 담배 : 250g

문의하신 물품이 기타 담배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다. 만약 HS Code 제2403.19-1000호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파이프 담배’에 분류된다면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본관세 : 40%
- * 개별소비세 : 21원/g
- * 지방세 : 36원/g
- * 지방교육세 : 43.99%
- * 부가가치세 : 10%(면세규격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담배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 시 인증물품별 생산자 정보에 가격 정보를 꼭 기재해야 할까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는 별도 작성 방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제7란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서 ‘(2) 가격정보’가 생산자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지, 인증물품 가격정보를 기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과 작성 방법은 인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는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직원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입 / 수입신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 직구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도 되나요?

해외 직구는 구매 형태를 의미할 뿐,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 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것은 자가사용 목적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을 개인 명의로 통관해 품목별로 요구되는 세금 및 요건 등을 면제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입죄 등)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돼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돼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해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조 용 지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1. 들어가며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 협약’) 및 그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표를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정해진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HS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자료로서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 두 지침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그대로 수용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기식 자동차용 조명기구(제8512호)와 발광다이오드(LED)(제8541호) 품목분류에 관해 LED 제품의 품목분류 범위에 대해 관세율표에 규정돼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명제품 판매 및 서비스업, 자동차의 조명장치에 사용되는 일체의 전기식 및 전자식 전구류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00. 00.부터 2018. 00. 00.까지 미국에 소재한 A社로부터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모듈(이하 ‘이 사건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쟁점물품을 관세율 0%에 해당하는 ‘발광다이오드’로 해서 품목번호(HSK)를 제8541.40-2090호로 수입·신고했다.

나. 피고는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쟁점물품의 통관 적법성 확인을 위해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이하 ‘이 사건 기업심사’라 한다)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으므로 추정세액이 0,000,000,000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등을 통지했다. 이 사건 기업심사 결과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 발체 ●

2. 품목분류 오류

- PCB 기판 위에 LED Chip, Capacitor, Thermistor 및 Connec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HSK 제8541.40-1000호 외, 협정 0%)로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자동차 조명기구인 HSK 제8512.20-1010호(기본세율, 8%)에 해당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재심사 회신(품목분류3과-○○, 20○○. ○. ○.) 참조
 - 예상 추정세액: ○,○○○,○○○,○○○원

... <중략>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미발급

- 기존 심사에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안을 적출한 것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

다. 피고는 이 사건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2019. ○○. ○○. 원고에게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알리는 과세전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전통지’라 한다)를 했다.

라. 원고는 2019. ○○. ○○. 관세청장에게 이 사건 과세전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관세청장은 2020. ○○. ○○. 각 쟁점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관세청 결정 주문 ●

1. 통지청이 2020. ○○. ○○., 2020. ○○. ○○. 2020. ○○. ○. 수입신고번호 ○○○○○-15-○○○ ○○○U호(신고일자 : 2015. ○○. ○○.) 등 2○○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합계 ○○○,○○○,○○○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합니다.
2. 실제지급가격 누락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미국 소재 A社와 원고와 특수관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합니다.
3.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고는 20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봐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16-○○○○○○M 외 2○○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세 ○○○,○○○,○○○원(관세에 대한 본세 부분), 부가가치세 ○○,○○○,○○○원(부가가치세에 대한 본세 부분), 가산세 ○○○,○○○,○○○원(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부분)의 합계 ○,○○○,○○○,○○○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원고에게 경정·고지된 본세 부분을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처분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과 관련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 00. 00. 원고의 위 발급신청을 기각하는 통보를 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2021.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물품은 LED 칩과 일부 수동소자들로 구성된 '발광다이오드'로 HSK 제 8541.40-2090호(이하 '제8541호'라 한다)로 분류돼야 하고, 관세청 역시 이 사건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LED 패키지 조립품을 제8541호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쟁점물품에 부착된 저항기, 서미스터 및 커패시터와 같은 소자들은 구매자의 추가 공정에 따라 설치되는 Driver IC(구동모듈)과 호환되지 않는 한 전류를 통제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위 소자들의 부착만으로 LED의 본질적인 기능이 달라지거나 추가·변경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은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에 한정'된 LED 물품이 아니므로 HSK 제 8512.20-1010호(이하 '제8512호'라 한다)로 분류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국내 수입 이후 결과적으로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사용됐다는 사정으로 그 품목을 제8512호로 분류한다면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관세법」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쟁점물품에는 전류를 통제하는 IC 드라이버나 광학기구, 방열판 등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에는 이와 같은 추가 부품들을 어떻게 결합해 향후 어떤 형태의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3) 해외에서도 이 사건 쟁점물품과 유사한 제품을 '발광다이오드'로 봐 제8541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4) 더 나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을 '발광다이오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물품의 용도가 '자동차용' 조명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을 '그 밖의 전기램프 또는 조명기구'로 봐 HSK 제9405호로 분류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설령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물품과 같이 그 기능이 다소 모호한 단계에 있는 LED 물품을 어떤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외 해석의 논란이 컸던 상황인 점, 이와 관련해 품목분류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조차 여러 차례 결정을 반복하는 등 품목분류에 혼선을 겪고 있던 상황인 점, 해외에서도 이 사건 쟁점물품을 제8541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을 ‘발광다이오드’로 봐 수입 신고한 것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한 신고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소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착오에 경미한 과실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4. 판결 내용의 요지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구조와 기능

가)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명은 ‘LED MODULE’이고, 구체적인 모델명은 ‘△△△△△’이다. 이 사건 쟁점물품은 PCB 기판 위에 LED 칩(LED Chip), 플럭스빈 저항기(Flux bin Resistor), 커넥터(Connector), 서미스터(Thermistor), 커패시터(Capaci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로 물품에 내장된 LED 칩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구성 요소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품명	영문명	기능 및 용도
LED 칩	LED Chips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발광다이오드
PCB 기판	PCB	LED Chip을 지지하고 전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연결용 부품
커넥터	Connector	전기회로의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접속기

부품명	영문명	기능 및 용도
NTC 서미스터	NTC Thermistor	온도 변화에 반비례해 저항이 변하는 소자(제8533호)로 구동 드라이버를 통해 LED의 과열시점을 결정하고 출력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부착
플럭스빈 저항기	Flux bin Resistor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한하는 소자(제8533호)로 구동드라이버를 통해 LED의 광량을 일정 간격으로 나뉜 Flux bin으로 관리하며, 해당 저항값에 맞는 적절한 전류를 출력하기 위해 부착
커패시터	Capacitor	전류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전류를 방전하는 기능을 가진 소자(제8532호)로, Thermistor와 Flux bin resistor의 저항값을 읽을 때 노이즈로 인한 오차를 감소하기 위해 부착

다) 이 사건 쟁점물품은 원고의 수입 이후 1차 벤더(Vendor)에게 납품돼 방열판, 안정기와 LED Driver, 반사판 등과 결합하는 추가공정을 거쳐 자동차용의 조명기구(전조등, 안개등, 헤드라이트 등)로 제작·사용됐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

가) HS 협약에서 정한 HS 품목표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6자리 단위(4단위의 호와 추가 2단위의 소호로 구성)로 나누고, 이와 관련해 품목분류의 통일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침으로, HS 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와 HS 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가 마련돼 있다. HS 해설서는 품목분류의 부, 류, 호 및 소호별로 범위를 정하고 주(註)를 뒤 용어의 의미와 해당 품목분류의 특징 등을 설명한 것이고, HS 분류의견서는 체약당사국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한 결정 등 HS위원회의 구체적인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나) HS 협약 및 HS 품목표는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이하 ‘품목분류표’라고 한다)에 수록돼 있는데, HS 협약 및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① 수출입 상품은 부(Section, 部), 류(Chapter, 類), 호(Heading, 號), 소호(Subheading, 小號) 순으로 분류하고, 류는 2단위 숫자로, 호는 4단위 숫자로, 소호는 6단위 숫자로 각 표시하되, 소호의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소호의 나머지 4단위는 HS 협약에서 정한 분류체계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며, ②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 註)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표는 HS 품목표의 6자리 단위에 4자리를 추가해 총 10단위로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문제되는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 그에 따른 세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율표 제8541호 ●

품목분류표	품명	세율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0%
2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0%
90	기타	0%

● 관세율표 제8512호 ●

품목분류표	품명	세율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
10	조명용 기구	8%
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나.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 내용의 요지 ‘인정사실’에 기재된 인정사실, 증거들, 제1심 법원의 B社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당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 제출의 의견서 포함)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물품이 제851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부과돼야 하는데(「관세법」 제17조),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는 제8541호에서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4그룹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광전지에 대해서만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관세율표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원칙적으로 모듈 또는 패널 형태의 제품은 그 이외의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구체적으로는 광전지의 경우만 제8541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점물품과 같이 PCB 기판 위에 LED 칩, 커패시터, 서미스터, 커넥터 등이 부착된 LED 모듈 형태의 제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다.

② 2014년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LED 패키지 등 LED 칩 형태를 벗어난 제품까지 제8541호로 분류함으로써 제8541호의 범위를 일부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LED 칩을 과전압 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제너다이오드(보호용 다이오드)만 부착된 것이어서 LED 칩에 흐르는 전류를 희망 광량을 얻기 위한 크기로 설정(제한)하는 플렉스빈 저항기, LED 칩 주변의 온도를 검출해 드라이버 IC에 그 값을 제공하는 NTC 서미스터, 고주파 잡음을 억제하는 커패시터 등 LED 칩 보호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자들이 부착된 이 사건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이 사건 쟁점물품에 부착된 일부 소자들의 기능이 향후 결합될 드라이버 IC를 통해 구현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2022년 HS 협약 개정을 통해 ‘보호용 다이오드’가 결합된 LED 칩도 제8541호로 분류하도록 명시되기는 했으나 ‘보호용 다이오드’의 포섭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2호증 제32쪽 등 참조), ‘보호용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제너다이오드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부착된 소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능상 구별되고, 전문심리위원도 제너다이오드와 위 소자들이 전혀 다른 부품으로서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물품은 제8541호 범위의 확대 경향에도 불구하고 제8541호에 포섭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용성을 지닌 제품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물품을 제8512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 본사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과 같은 □□□□□□ 제품군을 ‘Automotive LED’로 분류하고 있는 점, ㉡ 나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제품설명서에도 이 사건 쟁점물품을 국제 자동차규격을 갖춘 자동차 조명부품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용도 또한 자동차용 조명기구인 헤드라이트, 안개등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을 애초에 다른 용도로 분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 이 사건 쟁점물품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해 저항이 변하는 소자인 NTC 서미스터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조명용 LED와는 다르게 LED 접합부의 온도 범위가 영하 40℃에서 영상 130℃까지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작동함으로써 온도의 상승 또는 하강에 대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설계된

점,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협의 당시 이 사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전문심리위원회도 “이 사건 쟁점물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최적화되도록 완전히 특정해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 MCU나 드라이버 IC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특정해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쟁점물품은 그 용도를 ‘자동차용’ 조명기구의 핵심적 부분품인 광원으로 특정해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차용’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도 그 기능에 부합하는 용도로 납품·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 사건 쟁점물품이 제851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관세법」 제16조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와 관련해 원고의 주요 협력사인 B社 또한 “B社は 자동차용 램프 제조업체로 이 사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 램프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의 조명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그 밖에 원고가 국내로 수입한 이 사건 쟁점물품이 ‘자동차용’ 외에 다른 용도로 납품·사용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⑤ 이 사건 쟁점물품은 국내 수입 후 1차 벤더(Vendor)에게 납품돼 방열판, 안정기와 LED Driver, 반사판 등과 결합하는 추가공정을 거쳐 보다 완성된 형태의 제품인 전조등, 안개등, 헤드라이트 등으로 제작·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 ‘자동차용’ 조명으로서의 본질적인 기능·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이상 적어도 이 사건 쟁점물품은 위 규정 등에 따라서도 충분히 제8512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국내나 해외 사례들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구조, 기능 등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구조, 기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그 품목분류를 제8512호가 아닌 제8541호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품군(○○○○○○○ A○○○on)인 ○○○○○○ A○○○on SMD PnP 1○2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은 2017. 12. 27. 원고에게 “이 물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안개등 등의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에 해당하므로 발광다이오드 방식의 자동차용 조명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해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해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위 관세율표의 규정 내용과 형식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세계관세기구(WCO)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에서 이 사건 쟁점물품의 구조, 기능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에 대해 그 품목분류를 제8512호가 아닌 제8541호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제품들의 품목분류 결과를 이 사건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입신고를 했던 점, ④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기간 중 이 사건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품군의 자사 유사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위 물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안개등 등의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에 해당하므로 제8512호로 분류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의 부지·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정으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나, 다항에서 확인한 여러 사정에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 형태의 조명기구에 대해 제8541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에서는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에서 제8541호를 4그룹으로 분류하면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광전지에 대해서만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듈 또는 패널 형태의 제품은 그 이외의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구체적으로는 광전지의 경우만 제8541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점물품과 같이 PCB 기판 위에 LED 칩, 커패시터, 서미스터, 커넥터 등이 부착된 LED 모듈 형태의 제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쟁점물품의 범용성에 관한 판단에서도 이 사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기능과 설계의 방향, 제품군의 분류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자동차용’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활용된 것으로 봤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해설서의 문언에 규정돼 있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구속돼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은 발광다이오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관세법령 및 해설서의 문언에 규정돼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로서, 정확한 품목분류와 이에 따른 정당한 신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중 시스템 온수기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 -

김진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I. 개요

온수기(물 가열기)는 물을 전기 또는 가스 등을 이용해 데워주는 장치다. 순간식은 저장식과 비교하면 관 속에서 순간적으로 가열해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저장탱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간 효율성이 우수하다.

순간식 온수기는 온수를 즉시 원하는 양만큼 얻을 수 있고 기기가 소형이며, 열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저장식은 온수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식은 주로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사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열 온수기(SWH, Solar Water Heater)를 많이 사용하는데, 태양열 온수기는 태양열 집열기를 활용해 태양열을 포착하고 물을 가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태양열 온수기 ●



출처 : 한국에너지(Korea Energy) 홈페이지

세계 태양열 온수기 시장 규모는 2023년에 28억 4,430만 달러였으며, 2032년까지 39억 1,840만 달러에 도달해 연평균 성장률(CAGR)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2032년 세계 태양열 온수기 시장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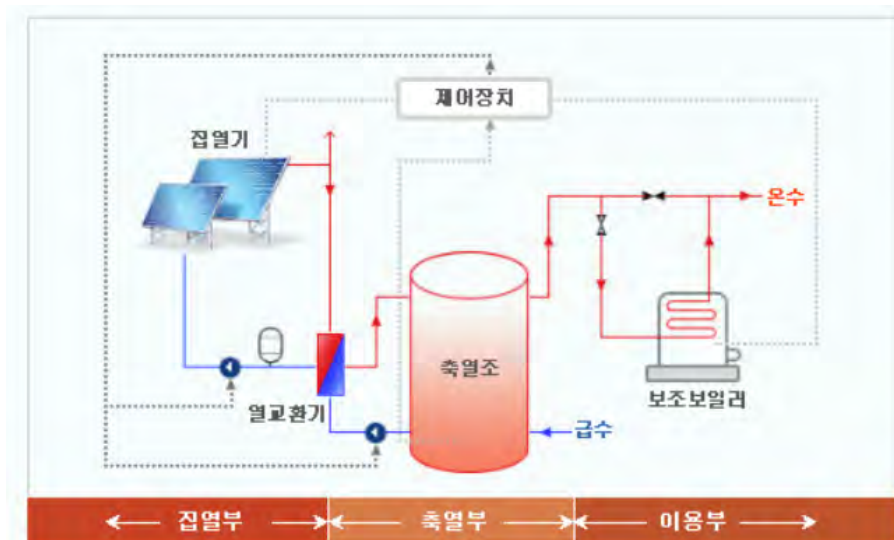


출처 : 비즈니스리서치인사이트(Business Research Insight)

태양열 온수기는 햇빛을 흡수하고 열을 유체(일반적으로 물 또는 열 전달 유체)로 전달한 다음 순환해 탱크에 저장된 물을 가열하는 태양광 패널 또는 수집기로 구성된다. 태양열 온수기는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온수 공급원을 제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준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기여한다.

태양열 이용 시스템은 태양열 에너지를 흡수해 열매체에 열을 전달하는 집열부, 가열된 열매체를 저장하는 축열부, 저장된 열매체를 취출해 이용하는 이용부 및 이들 사이에서의 열매체 이동을 제어하는 조절부 등으로 구성된다.

● 태양열 이용 시스템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최근에는 다기능 물품의 개발로 태양열 온수기에 전기히터가 장착된 이중 온수기가 등장하고, 가열 방식이 융합된 다양한 온수기가 출현해 품목분류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태양열과 전기히터가 장착된 이중 시스템 온수기의 WCO HS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쟁점 사례

■ WCO HS위원회 결정 사례

□ 물품 설명

이 제품은 가정용 이중 시스템 온수기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태양열 또는 전기로 작동할 수 있음. 이 시스템은 물을 가열하고 가열된 물을 집안의 샤워기 또는 기타 수도꼭지로 순환시키도록 설계됨.

태양열 집열판과 온수 저장 탱크로 구성돼 있으며, 집열판(패널)은 펌프를 통해 집의 급수장치에서 찬물을 공급받음. 패널의 물은 태양열로 가열돼 사용하기 전까지 저장탱크에 저장됨. 물 가열장치는 전기 가열 요소로 구리 코일을 포함함. 동 구리 코일(전기 발열체)은 물탱크에 연결돼 전기적으로 물을 가열함.

단 쟁점물품은 구리 코일(전기 발열체) 없이 제시됨.

○ 쟁점 세번 : 제8419.12호(태양열 물 가열기)

제8516.10호(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제8419호 논지

본 물품은 태양열 물 가열기로서 태양열 방식이 주 기능이며, 전기식 가열장치(구리 코일)는 태양열 가열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보조적인 요소로 보임.

제8419호에는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됨. 따라서 쟁점물품은 복합다기능 기계로서 주 기능은 태양열 방식의 물 가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태양열 물 가열기’가 분류되는 제8419.12호에 분류함.

○ 제8516호 논지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이중식 가열기를 예시하고 있음.

제8516호 해설서에서 ‘(3) 이중식 가열기(dual-system heater)’에 대해 “물을 전기식으로 가열하거나 연료 가열식 온수장치에 연결함으로써 가열하며 ; 때때로 다른 가열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할 때에만 전기식으로 작동하도록 온도조절기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비록 쟁점물품에는 전기식 가열장치인 구리 코일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경우 전기식 가열기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10호에 분류함.

○ 논의 결과

쟁점물품은 WCO에서 논의 후 제8516.10호로 결정됐다.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 수용됐다.

8516.10 2. 이중 시스템 온수기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태양열 또는 전기 또는 둘 다에 의해 작동할 수 있음. 본 물품은 태양 패널에 집열기, 펌프 그리고 온수 보관 탱크가 있음. 제시된 상태에서 전기발열 보조기구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구리 코일을 제외한 모든 전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태양열 난방을 사용할 때는 집열기의 물은 태양열 패널에 의해 가열된 다음 저장탱크에 저장된다. 단독으로 또는 태양열 난방과 함께 전기로 가열할 때 설치해야 하는 구리 코일에 의해 저장탱크의 물이 가열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

III. 사례 해설

이와 같이 태양열 및 전기식의 이중 온수기에 대한 품목분류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자,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이중 시스템 온수기 결정사항의 세부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할 내용은 첫째, 전기식 가열기에 비전기식 가열 기능이 있는 경우 전기식(제8516호)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 기능을 찾아야 할지 여부이며, 둘째는 전기식으로 볼 경우 구리 코일이 없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사용해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우선 전기식 가열기에 비전기식 가열 기능이 있는 경우 전기식(제8516호)으로 볼 것인지 관련해, 태양열 및 전기식 물 가열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제8419호와 제8516호의 용어에서 언급하고 있다. 즉 호의 용어상 전기식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비전기식의 물 가열기인 경우 제8419호에, 전기식인 경우 제8516호에 분류할 수 있다.

■ 제8419호의 용어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non-electric)**

■ 제8516호의 용어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장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의 용어상으로는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다기능기계의 분류 원칙인 주 기능에 따라 쟁점물품을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16부 주 제3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하지만 제8516호 해설서를 살펴보면 제8516호의 범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8516호의 전기식 물 가열기는 전기식과 함께 연료 가열식 등 다른 가열식도 포함하는 이중식 가열기도 포함하고 있다.

■ 제8516호 해설서

(A)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3) **이중식 가열기(dual-system heater)** : 물을 전기식으로 가열하거나 연료 가열식 온수장치에 연결함으로써 가열하며 ; 때때로 다른 가열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할 때에만 전기식으로 작동하도록 온도 조절기가 갖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제8516호의 용어상 전기식 물 가열기는 순수한 100% 전기식 외에도 전기식과 타 방식의 겸용도 가능하도록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WCO HS위원회에서 각국이 쟁점물품을 제8516호로 결정한 이유로 보인다.

이 경우 복합다기능기계 규정을 적용해 주 기능을 찾는 대신 제8516호의 용어인 ‘전기식 물 가열기’의 범주에 전기식과 비전기식의 겸용도 포함되도록 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두 번째 검토사항으로, 이중 시스템인 쟁점물품을 전기식으로 볼 경우 구리 코일이 없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사용해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을지 여부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아쉽게도 쟁점물품의 전기적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다. 다만 이중식 온수기의 전기적인 방식은 제시되지 않은 구리 코일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장치, 구성 부품, 커넥터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WCO에서는 앞서 언급한 HS 품목분류의견서와 같이 구리 코일을 제외한 전기 발열을 위한 다른 모든 구성요소가 제시됐다고 판단해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것이다.

즉, 전기식 온수기 기능을 위한 전기적 요소가 다수 제시되지 않은 경우,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 전제 조건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구리 코일 외에 다른 전기식 온수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전한 전기식 온수기로 본 것이다.

다만 다른 전기식 구성요소에 대해 HS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WCO에서는 제시된 상태에서 구리 코일만 장착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첫째, 제8516호의 전기식 물 가열기의 범주를 살펴봤고 둘째로 구리 코일이 없는

쟁점물품의 통칙 제2호 가목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첫 번째로 제8516호의 ‘전기식 물 가열기’와 제8419호의 ‘비전기식 물 가열기’가 경합될 경우, 이번 사례에서는 제8516호 해설서에 따라 제8516호의 전기식 물 가열기의 범주를 넓게 봤지만 과연 해설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적 물 가열 방식을 태양열 가열의 보조적인 방식으로 본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다기능기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쟁점물품의 주 기능을 제8419호의 ‘태양열 물 가열기’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HS 협약 발효 시부터 제8516호의 ‘전기식 물 가열기’의 범주에 전기식·비전기식 겸용을 포함하도록 의도했다면 이번 제8516호 결정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8516호의 용어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8516호의 용어를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제8516호의 용어 ●

개정 전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개정 후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전기식과 비전기식의 겸용도 포함한다)

태양열 물 가열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통계 작성 및 활용을 위해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HS 2022 6단위인 제8419.12호로 신설됐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열 물 가열기와 다른 방식이 복합된 물품인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무역 통계 작성을 위해 제8419호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 제8419호의 용어 ●

개정 전 :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개정 후 :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태양열과 전기 가열식 물 가열기를 포함한다)

IV. 시사점

이번 호에서 최근 환경 보호,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열·전기 물 가열기의 품목분류를 살펴보았다.

태양열 물 가열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통계 작성 및 활용을 위해 국제기구 요청으로

HS 2022 6단위인 제8419.12호로 신설됐지만, 쟁점물품 이중식 물 가열기는 태양열 물 가열기(제8419.12호)가 아닌 전기식 물 가열기(제8516.10호)로 결정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소호 통계에 잡히지 않고 전기식의 물 가열기로 통계에 잡히게 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 방식에 결합된 타 방식이 융복합된 다양한 물 가열기가 수출입 거래되고 있으나, 명확한 분류를 위한 소호가 없어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경우 태양열 물 가열기에 전기적 방식 외의 다른 가열 기술과 구성요소가 추가되면 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바뀔 여지도 있다.

이번 호에서 언급한 이중 시스템 온수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물 가열기 관련 제품의 구조, 기능 및 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출입신고 시 적절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치간 청결용 실 분류사례 - 2020년도 11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하루 세 번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데 꼭 치실을 사용해야 할까? 치실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칫솔질을 한 후에 치실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뉴욕대 치과대학 알라 휠러 교수는 해외 건강매체 웹엠디를 통해 “칫솔로 치아에 엉겨 붙은 박테리아와 치태를 전부 해결할 수가 없다. 치실은 칫솔로 닦을 수 없는 부위까지 청소하도록 도와 구강 위생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치실,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 치실 사용으로 치아 수명 늘어나

칫솔질로는 박테리아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치아 사이에 존재하

는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는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히 없애기 힘들다. 치실로는 이를 청소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치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아 수명이 6.2년 연장된다고 한다.

● 잇몸 질환 있다면 치실은 필수

치실은 모든 사람의 구강 건강에 도움된다. 특히 잇몸 질환이 있거나 임플란트를 했다면 치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한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실을 사용했을 때 잇몸 염증으로 인해 피가 날 수도 있지만, 지속해서 사용하면 세균이 없어지면서 염증이 완화된다. 아울러 덧니가 있는 등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보철물, 임플란트를 한 사람은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쉽게 끼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치실로 치아 사이 벌어지진 않아

많은 사람이 치실에 대해 오해하는 점 중 하나가 치실을 많이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치실을 처음 사용하면 치아 사이 치태가 제거되면서 잇몸 부종이나 염증이 완화돼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다. 또한 치실을 한번 사용할 때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치아 틈새가 벌어지진 않는다.

그렇다면 치실은 이 닦기 전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서던캘리포니아대 치과대학 매튜 나자드 박사는 해외 매체 폭스뉴스를 통해 치실은 칫솔질 전에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치실이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이나 치태를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실 후 이를 닦으면 찌꺼기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치실이 처음이라면 앞니부터 사용해 치실 사용법을 숙지하고 어금니까지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사용하느냐보다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치간 청결용 실(치실)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폴리에틸렌 재질의 치실과 플라스틱제 몸체로 구성된 제품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EA)

- 용도 : 치간 세정용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3306.20-9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20 소호에는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치간 청결용 실(yarn)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 dental floss]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위 물품 설명과 같이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치간 청결용 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20-9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
류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호	(제3306호)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
HSK	(제3306.20 소호) 치간 청결용 실(치실) (제3306.20-9000 소호) 기타

4. 품목분류 유의사항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이라도 ‘치간 청결용 실(yarn)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 dental floss)’은 제3306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자.

■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제1호 마목

이 부에서 '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제3306호)'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주 제3호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

5.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3306.20-9000호
품명	Dental floss; 일회용치실-DENTAL FLOSS
	- 폴리에틸렌 재질의 치실과 플라스틱제 몸체로 구성된 제품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EA) - 용도 : 치간 세정용

물품 설명



활성탄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활성탄은 야자각(Coconut shell), 목재(Wood) 등의 원료를 이용해 500 ~ 600℃의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숯(Char)이 되는 탄화 단계를 거쳐 900 ~ 1000℃의 고온에서 수증기, 탄산가스, 공기 등의 산화가스와 접촉 반응시키는 활성화(Activation)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숯에 비해 비표면적이 훨씬 넓고 미세공이 더욱 발달된 무정형의 집합체인 우수한 흡착제로 넓은 내부 표면적과 수많은 세공이 있다. 주위 액체 또는 기체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화장품부터 담배, 정수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펠릿상의 활성탄을 차량 등 탈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직포 백에 충전한 것을 수지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활성탄’인 제3802.10-0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3802호에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02.10 소호에는 ‘활성탄’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탄’에 대해 “이것은 보통, 식물성·광물성·그 밖의 탄소(목탄·야자각탄·이탄·아탄·석탄·무연탄 등)를 고온에서 증기·탄산가스·그 밖의 가스 존재 하에 처리하거나(가스 활성화 처리) 특정 화학품의 용액을 침투시킨 섬유소재료를 건조 하소(煅燒)하여(화학적 활성화 처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제외규정 (c)에서 ‘냉장고·차 등의 탈취제로서 소매포장한 활성탄(제3307호)’을 제380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

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3307.4 소호에는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물품은 제3802호에 분류되는 활성탄을 탈취제로 사용하기 위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에 해당해 제3307.49-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Activated carbon	3802.10-0000 (FCN1 0%)	Preparations for deodorizing rooms	3307.49-0000 (FCN1 0%)

매운맛의 원조, '청양고추' 재배 면적 점차 줄어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올해 6월 우리나라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등 매운 라면 제품이 덴마크 정부에서 리콜 조치를 받았다. 당시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의식품청은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서 반품해야 한다”고 권고 하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매운 음식 애호가들이 매운맛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리콜 조치 한 달여 만에 덴마크 정부는 이를 철회했다. 매운맛 라면은 캡사이신 함유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식기 등에 잔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토대로 수의식품청은 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결국 리콜 조치 철회를 결정했다. 이후 우리의 라면이 날개 단 듯 특히 유럽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요즘 국내에서도 매운맛의 상징인 마라탕 가게가 5년 만에 10배 증가할 정도로 가히 폭발적으로 ‘매운맛 중독’이 확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매운맛을 담당하는 고추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양고추 대신 캡사이신을 첨가한 인공적인 매운 소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청양고추보다 저렴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편해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가정에서 요리를 자주 하지 않는 1~2인 가구는 청양고추를 사서 요리하기보다 비빔면이나 볶음밥 같은 간편한 끼니에 매운 소스를 곁들이는 편이다. 즉 전통의 얼얼하게 매운 청양고추가 인공 핫소스로 대체되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

고추는 식물학상으로 보면 과실로 볼 수 있으나[해설서 제08류 총설 및 (a) 참조]

그러나 관세율표에서 고추는 과실이 분류되는 제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이 아닌 채소로서 제0709호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된다.

단, 관세율표 제07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 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5호_2024.11.4.

최신개정법령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시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입법예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근에 대해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배추 및 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6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로 한다.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7]

2024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 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신선한 것으로 한 정한다.	0 18,000톤

[별표 18]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4		양배추·꽃양배추·콜라비(kohlrabi)·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90	기타	배추(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 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90	기타		
		1. 무	0	수입전량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10.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10.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3조의2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세율은 제3조의2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시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52호, 2024. 11. 1.)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 농어민의 FTA 활용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물,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주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 승인서와 인증품목 및 축산물(꿀)등급 판정 확인서와 천연꿀을 원산지확인서로추가 인정하여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인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BOM), 원재료구입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원산지 확인서 등)를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 1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한 품목번호 정비 및 인증서류 발급근거 개정
 - 예 따른 인증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인정 품목 및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인정 품목)

구분	신규 추가 품목
별표1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등 2개 품목
별표2	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김(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굴(냉동한 것), 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봉장어 필레(신선·냉장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봉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등 16개 품목
별표3	천연꿀 1개 품목
별표5	냉동삼치 1개 품목

○ (신규 인정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서식
수산물	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서식20
축산물	㉔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 받은 자 포함)	서식21

서식 20,21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서식20]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표1]과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 연번 품목의 HS품목번호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구분	해당 연번
별표1(농산물)	No. 3·9·91·146·187·196·290·293·339·367·385·546·592·611·685·750·814·960·975·978·1009 등 21개
별표2(수산물)	No. 3·6·12·17·21·42·48·55·58·61·65·76 등 12개

[별표1]~[별표5]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연번 품목의 품목명, HS품목번호 등 오류사항을 개정한다.

구분	해당 연번
별표1(농산물)	No. 111·366·881 등 3개
별표2(수산물)	No. 13·29·41·56·63·70·72 등 7개
별표3(축산물)	No. 1·2·3·4·5 등 5개
별표4(식품류)	No. 30 등 1개
별표5(지역특산물)	No. 6·14·15·27·45 등 5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의 발급근거 개정에 따라 아래의 인증서 서식을 개정한다.

○ 인증서 [서식1·2·3·4·7·8·9·10·17·19]

입법예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67호, 2024.10.2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2022년 6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성에 관계없이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통제대상폐기물에 포함되었는 바, 관련 목록을 바젤협약에 알맞게 현행화 하는 한편, OECD 가입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경우 바젤협약 통제대상폐기물에서 제외되는 OECD 녹색폐기물에 해당하나 현행 고시에 누락된 폐기물을 추가하고,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폐기물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바젤협약 개정으로 새롭게 통제대상폐기물로 추가된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수출입규제폐기물 목록에 추가하고(안 별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목록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을 삭제함(안 별표2)
- 나. OECD 녹색폐기물 중에서 현행 고시에 누락된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조립품(GC010)’, ‘비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폐기물 및 재생된 전자 구성품(GC020)’ 등 6종을 추가함(안 별표1)
- 다.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AC020)’을 삭제함(안 별지)
- 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바젤협약 목록과 OECD 목록이 혼재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록의 순서를 바젤협약 부속서 II, 부속서 VIII, OECD 황색폐기물 목록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배열함(안 별지)

마. 별표1의 제목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에서 ‘바젤협약 적용 제외 폐기물 목록’으로 내용에 맞게 변경(안 별표1)

바. 규제 및 고시의 재검토기간의 기산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재설정하고 제3조의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등’으로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395호, 2024.10.30.)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만감류는 수확 후 30일 정도 후숙하여 선과하므로 선과 30일 전 수출단지 등록 시 재배지검역 수행이 어려움
- 현행 고시는 SOPP(Sodium ortho-phenylphenate) 사용만 유효한 소독 방법으로 인정하나 실제 국내에서는 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타 소독제 사용 중*으로 개정 필요
- * U측에 해당 소독방법 인정 요청('24.8.)하여 EU측 수용함('24.9.)

2. 주요 내용

- 가. 표기 변경 등 단순 자구 수정(제1조, 제3조 및 제12조 2항)
- 나. 현재 수출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출단지 등록 시기 등 변경(제6조 및 제9조)
- 다. EU측 수용에 따른 소독 방법 추가(제11조 2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dolemont@korea.kr, ☎054-912-0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3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간 도서



2024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수출입 통관 업무의 백과사전

세율 및 개정 고시 반영, WTO1가 수록기준 변경, 간이징액환급률표 등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상·하권 p.4,984 | 120,000원



2024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2024년 4월 1일 기준 개정 법령 수록, 관련 고시까지 한눈에 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p.1,728 | 60,000원



무역금융범죄의 사이클

무역금융범죄 139개 유형 심층분석

이호능·천홍욱·황인욱 공저 | p.590 | 40,000원



2023 관세환급실무

관세환급 실무중심 사례 소개

윤철수·이상학 공저 | p.603 | 50,000원



2023 관세형사법

관세무역 적법절차 준수 지침서

박영기·조재웅 공저 | p.896 | 60,000원

온라인 도서 구매 10% 할인

구매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